

##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

의안  
번호

172

제출년월일 : 2004. 1. .

발 의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□ 제정이유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 규 강 교육위원의 4명이 발의
- 학교급식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관내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함.(안 제3조)
- 교육감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게 제정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되도록 임무를 부여(안 제4조)
- 지원방법을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-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.(안 제7조, 제8조)

-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를 정하여 학교급식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.  
(안 제9조, 제10조)
- 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,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(안 제11조)
- 지원대상 학교장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하여 식재료 검수과정에서부터 배식과정에 이르기까지 참관하도록 함.(안 제12조)
-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학교와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.(안 제13조)
-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14조)

재정안 : 불입과 같음

참고사항

- 관계규정 : 불입과 같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·축·수산물(이하 "우수농산물"이라 한다)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함은 물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"우수농산물"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·축·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된 식품을 말한다.

② "식재료"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충청북도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·중·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교육감의 임무)** ① 교육감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원·요청하여 지원을 받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급식대상학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방법)** 교육감은 지원대상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신청)**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을 통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)** ①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 2인과 위촉직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,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.

1. 학부모단체
2. 교사단체
3. 농민단체
4. 시민단체
5. 충청북도영양사회
6. 식품영양에 전문지식이 있는자

④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⑤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평생교육체육과 급식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

⑥심의위원회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.

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**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원대상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
2.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
3. 식재료 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
4.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9조(지원대상학교의 의무)**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학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학기당 지원금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식재료 공급자의 의무)**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학교급식의 직영화)** ①교육감은 위탁급식을 학교직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교육감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며 그 실태를 매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학교급식 참관인 구성)** ①지원대상학교의 장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으로 참관인을 구성한다.

②참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식재료 점수과정
2. 조리과정
3. 식재료 및 시설설비 위생관리
4. 배식과정

**제13조(지도·감독)** ①교육감은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가 공급하는 식재료 및 지원대상학교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수시 조사할 수 있고 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지원대상학교가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

# 관 계 규 정

## □ 학교급식법

**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임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)** 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.

② 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경비부담)** ①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시설·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경비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학교급식법 시행령

**제2조 (학교급식의 실시범위)** 학교급식 실시 학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되, 미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□ 학교급식법 시행규칙

제2조 (정의) 이 규칙에서 “급식학교”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.

## □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

제20조(학교내외의 자생조직)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